



# 소장펀드 최대 240만원·월세 75만원까지 환급

〈소득공제장기펀드〉

소득공제→세액 공제로 변경

연금저축·주택청약 등 세테크 유리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소득공제

자녀 교육·급식비 영수증 챙겨둬야

## 환금액 늘리려면?

### 연금저축 가입

**내용** 연간 400만원 한도로 12% (48만원) 세액공제  
**활용** 연말까지 연금저축 상품 가입후 400만원 납입

###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

**내용** 연간 600만원 한도로 240만원 소득공제  
**활용** 연말까지 가입후 600만원 납입

### 체크카드 사용

**내용** 총급여 25% 초과분에 대해 30%까지 소득공제/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한해 전년도 사용액의 절반을 넘어서는 사용액의 40% 추가 공제  
**활용** 신용카드(15%)보다 소득 공제율이 높아 연말까지는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

### 월세 세액공제 신청

**내용** 월세액의 10%(75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활용** 신청요건이 총급여액 5000만원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된 만큼 적극 신청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올 1월부터 12월말 사이의 소득과 지출을 대상으로 내년 1월에 한다.

그만큼 직장인들로서는 남은 한 달간이라도 각종 증빙 자료를 꼼꼼히 챙기고 소비에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세테크’에 관심을 두면 그만큼 환급받는 금액을 늘릴 수 있다.

특히 내년초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인적공제, 의료비 등이 종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고 근로소득공제율도 조정돼 총 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환급액이 낮아질 가능성도 큰 만큼 예년보다 더욱 꼼꼼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세무회계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공제방식 변화...소득공제→세액공제=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변화는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등 일부 항목이 종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점이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대상 금액을 공제(차감)한 뒤 남은 금액(과세대상 소득·과세표준)에 구간별 소득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산출하지만,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 뒤 세금에서 일부를 차감하는 방식이다.

자녀인적공제의 경우 종전에는 6세 이하의 1명당 100만원, 출생·입양시는 1명당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 왔지만 이번 연말정산 때부터는 자녀 1~2명은 1인당 15만원, 2명 초과시에는 추가로 1인당 2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 준다.

의료비 등 특별공제 대상 항목도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은 15%가,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12%가 각각 적용된다. 100만원이던 근로자 표준공제도 12만원의 세액공제로 바뀐다.

세액공제 전환과 함께 과세표준(과표) 구간별 세율도 조정된다. 과표는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이다. 1200만원 이하, 1200만원~4600만원, 4600만원~8800만원은 각각 6%, 15%, 24%로 변화가 없다.

그러나 8800만원 초과 부분은 변동이 있다. 종전에는 3억원까지 35%, 3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 38%를 적용했지만, 올해는 1억5000만원까지 35%, 1억5000만원 초과부분에 대해 38%가

### ■ 주요 세액공제 전환 항목

| 항목      | 올해(소득공제)   | 내년(세액공제)   |
|---------|--|--|
| 자녀      | 6세이하 1명당 100만원/출생·입양 1명당 200만원/자녀 2명시 100만원 추가/자녀 2명 초과시 100만원+2명 초과 1명당 200만원 | 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자녀 2명 초과시 30만원+2명 초과 1명당 20만원/6세 이하, 출생·입양, 다자녀 추가 공제 폐지 |
| 연금보험료   | 연금계좌 납입액 400만원   | 400만원 한도 12%   |
| 보장성 보험료 | 100만원 한도   | 12%  |
| 의료비     | 총급여 3% 초과 금액/700만원 한도  | 15%  |
| 교육비     | 대학생 900만원,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생 300만원 한도   | 15%  |
| 기부금     | 법정기부금:소득금액 100%/지정기부금:소득금액 30%/종교기부금:소득금액 10%                                  | 15%(3000만원 초과시 25%)  |
| 월세      | 월세액의 60%로 500만원 한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자 한정  | 월세액의 10%(75만원 한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자  |
| 표준공제    | 100만원  | 12만원   |

각각 적용된다. 고소득자일수록 세금 부담이 느는 것이다.

특히 세액공제 적용 확대는 고소득층에는 불리하고 저소득층에는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액공제는 소득구간별로 달랐던 공제비율을 일원화하기 때문이다.

과표 7000만원 소득자의 경우 300만원의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24%의 세율이 적용돼 7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세액공제(세율 15%)시에는 45만원으로 환급액이 줄게 된다. 반면 과표 1200만원 미만의 근로자가 300만원의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으면 6%의 세율이 적용돼 18만원을 환급받지만, 세액공제시에는 45만원으로 환급액이 늘게 된다.

◇세테크 상품·월세소득공제 주목...체크카드도 도움=세무회계업계에서는 공제방식 변화로 소득 구간별로 환급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올 수 있는 만큼 절세 금융상품 가입,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사용 등 세테크에 관심을 갖는 것이 도움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를 비롯해 연금저축, 주택청약, 세금우대종합저축 등이 대표적인 상품이다.

지난 3월 출시된 소장펀드의 경우 연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가 연간 최대 600만원인 만큼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납입액의 12%에 대해 세액공제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간 120만원 한도 내에서 40%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소득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만 20세 이상 가입자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율이 아닌 9.5%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금액에도 합산되지 않는다. 만 60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은 30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세입자인 경우 전·월세공제 제도가 개선된 만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무주택 세대주만 대상이 됐지만 세대주가 공제

를 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이 받을 수 있다.

월세 소득공제도 세액공제(10%)로 변경됐으며 확정일자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대상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7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됐다. 집주인과의 마찰 등이 우려돼 공제신청이 꺼려지면 추후에 청구(경정청구)할 수도 있다. 기간은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여야 한다.

일상생활의 소비 패턴을 바꿔 절세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 신용카드의 경우 소득공제율이 15%이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인 만큼 체크카드 사용이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된다. 신용카드를 교통카드로 사용했을 경우 30% 공제가 적용된다.

자녀가 있는 근로소득자라면 교육비나 교재비, 급식비 등 공제대상 항목의 영수증은 확실하게 챙겨놓는 것이 좋다.

맞벌이 부부는 누가 지출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의 혜택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부부의 급여 차가 많으면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 등을 몰아서 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만큼 과표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반면 급여 차이가 적으면 과세 표준이 최대한 같게 공제금액을 분배하는 게 낫다.

/연합뉴스



### 신축원룸 매매

전대정문 2분!  
전대후문 2분!  
신축 4층

**룸 12개**  
1층점포 1개  
2~3층 룸 10개  
4층주택 1개  
옥탑

월수익 500만  
매가 6억 7천  
(보 4천, 용 1억 5천)

원룸전문취급  
원룸물건 다량있음  
(금액 4억~12억)

010-6670-9800

### 상가건물매매 7층 사우나건물

-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 사거리 옆 7층 건물사우나  
대지 96평/건평 570평  
월수익 980만  
주인 직접 운영 시  
2,000만 수익 발생(1년 2억 4천)  
매가 13억(보 2억, 용 5억)
- 북구 우산동 4층 상가주택 건물  
대지 120평/건평 500평  
월 수익 900만, 매가 10억
- 북구 오룡동 8층 건물  
1층 상가, 삼성전자 앞  
보 2억, 용 15억 오피스텔 58개  
월 수익 3,000만, 매가 35억
- 북구 상가건물 3층  
토지 160평/건물 200평  
월 수익 1,200만, 매가 21억
- 수원구 상가건물 4층  
(우미아파트 밀집)  
월 수익 900만, 매가 17억

(주)대신 010-6670-9800, 062-382-5500

### 나주 2층상가 건물매매

나주 삼영동  
영강초교 앞 2층  
영산중·영산중고교  
대덕아파트 앞  
건물 135평, 1.2층 80평  
1층→6칸 2층→2칸  
(80평 개인사용가)  
(분할가능, 주택가능)  
월 200만, 용 1억  
매가 3억 2천  
할인 → 2억 8천

### 목포 전원주택 매매

목포시 용해동 전원주택  
바닷가 5분, 용해동교회  
이루시장 1분  
금호타운 아파트 바로 앞  
노후주택 적합  
대지 310평, 주택 2채 50평  
현 무화과 식재 됨, 과수원  
매가 3억 2천  
할인 → 2억 8천

010-6832-9700

### 상가임대(5층) 학원 운영 하실 분

울리모델 시설완비

지하주차장 8대 가능

임대로 저렴함

010-6670-9800  
062)382-5500

### 경매 무료 교육

운암점 챔피언  
운암동 문화예술회관 육교앞  
현대빌딩 8층

기본반 · 고급반  
실전반 · 평생반

이제 경매가 대중화 시대  
교육화 실천가능

010-6832-9700  
062)513-4900

---

### 경매 무료 교육

상무지구 12월 1일

12월 1일 오피스(상무지구)

최고의 실전반 모집중

010-6670-9800  
062)382-5500

### (주)대신경매 추천물건

#### 근린시설 · 근린주택

- 서구 화정동 (토 171㎡, 건 501㎡) 감평가 2억 7천 최저가 1억 9천
- 서구 화정동 (토 372㎡, 건 1255㎡) 감평가 10억 최저가 5억 7천
- 동구 동명동 (토 838㎡, 건 2190㎡) 감평가 17억 최저가 11억
- 서구 치평동 (토 1599㎡, 건 17380㎡) 감평가 223억 최저가 156억
- 장성군 삼계면 (토 1068㎡, 건 631㎡) 감평가 2억 5천 최저가 1억 4천
- 동구 대인동 (토 105㎡, 건 106㎡) 감평가 1억 4천 최저가 1억 4천
- 남구 백운동 (토 315㎡, 건 635㎡) 감평가 5억 최저가 3억 5천
- 북구 문흥동 (토 216㎡, 건 353㎡) 감평가 2억 6천 최저가 1억 8천
- 북구 문흥동 (토 193㎡, 건 338㎡) 감평가 2억 3천 최저가 1억 6천
- 동구 계림동 (토 445㎡, 건 1558㎡) 감평가 10억 최저가 7억 5천

#### 토지

- 광주 광산구 쌍암동 (토 3974㎡) 감평가 45억 최저가 25억 (상업지역, 최고위지, 오피스텔, 도시형 주택적합)

#### 특수물건(공사중 건물 동구 용산동)

- 동구 용산동 (토 1316㎡) 감평가 16억 2천 최저가 11억 3천

경매학원 배우실 분 연락요망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으신 분(직원채용)

010-6670-9800, 062)382-5500